

의안번호	제2777호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정영환 의원 등 9인
발의연월일	2024. 5. 2.

고성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영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77
----------	------

발의연월일 : 2024. 5. 2.

발 의 자 : 정영환, 김향숙, 김석한,
우정욱, 이쌍자, 김원순,
최두임, 김희태, 허옥희
의원(9인)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고성군 내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의 설치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설치비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지원대상,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다. CCTV 등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나.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23호

- 예고기간: 2024. 5. 8.(수) ~ 5. 13.(월) [5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없음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관내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하여 마을 방범용 CCTV의 설치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범용 CCTV”란 마을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비용 등의 지원)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마을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 대상은 관내 읍면 치안 취약지역 및 마을입구 또는 범죄발생 우려지역으로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설치예정지 주민 동의가 불가능한 곳
2. 현저하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
3. 그 밖에 CCTV 설치지역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곳

② 마을방범용 CCTV의 유지보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설치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군수는 천재지변 등 유지보수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복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유지보수) ① 군수는 CCTV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 통합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방범용 CCTV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CCTV 등의 관리) ①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운영비(공공요금)는 마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방범용 CCTV의 관리 및 정상동작 여부 확인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및 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마을방범용 CCTV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발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14.>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2023. 3. 14.>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3. 14.>

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3. 3. 14.>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⑧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14.>

[제목개정 2023. 3. 1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